THE SHARP
하남에디피스

더샵 하남에디피스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9.23.]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전문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의 전문 및 관계법령이 우선함.
본 아파트의 견본주택은 견본주택 내 안전사고의 예방등을 위해 방문시 반려동물의 입장은 금지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하남시 주택과 - 33445호(2021.09.1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0~25층 10개동 총 980세대중 임대50세대, 일반분양 5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95세대(일반[기관추천] 59세대, 다자녀가구 59세대, 신혼부부 119세대, 노부모부양 17세대, 생애최초 4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	합계		총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 공급	최하층 배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708	01	039.4490A	39A	39.4490	16.6350	56.0840	30.0070	86.0910	22.6851	5	-	-	2	-	-	2	3	-
		02	039.5100B	39B	39.5100	16.4820	55.9920	30.0540	86.0460	22.6479	2	-	-	-	-	-	0	2	-
		03	050.1990	50	50.1990	19.2020	69.4010	38.1850	107.5860	28.0713	8	1	-	1	-	1	3	5	-
		04	059.9800A	59A	59.9800	19.3870	79.3670	45.6250	124.9920	32.1023	294	14	26	76	9	12	137	157	19
		05	059.8820B	59B	59.8820	19.7810	79.6630	45.5500	125.2130	32.2224	108	12	10	20	4	8	54	54	4
		06	074.6420	74	74.6420	24.4730	99.1150	56.7770	155.8920	40.0903	101	13	15	15	2	14	59	42	6
		07	084.8740	84	84.8740	24.8450	109.7190	64.5610	174.2800	44.3794	78	19	8	5	2	6	40	38	10
계											596	59	59	119	17	41	295	301	39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부가세 없음)

타입 (약식 표기)	동호 구분	층 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건축비	대지비	계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2022.04.04	2022.07.04	2022.10.04	2023.05.01	2023.08.01	2023.11.01	
39A	104동(5,6호)	12~18	2	101,546,905	198,813,095	300,360,000	60,072,000	30,036,000	30,036,000	30,036,000	30,036,000	30,036,000	30,036,000	60,072,000
		19층이상	3	106,876,905	198,813,095	305,690,000	61,138,000	30,569,000	30,569,000	30,569,000	30,569,000	30,569,000	30,569,000	61,138,000
39B	104동(3호)	19층이상	2	106,693,040	198,486,960	305,180,000	61,036,000	30,518,000	30,518,000	30,518,000	30,518,000	30,518,000	30,518,000	61,036,000
50	104동(4호)	5~11	3	120,152,811	246,017,189	366,170,000	73,234,000	36,617,000	36,617,000	36,617,000	36,617,000	36,617,000	36,617,000	73,234,000
		12~18	4	125,652,811	246,017,189	371,670,000	74,334,000	37,167,000	37,167,000	37,167,000	37,167,000	37,167,000	37,167,000	74,334,000
		19층이상	1	132,242,811	246,017,189	378,260,000	75,652,000	37,826,000	37,826,000	37,826,000	37,826,000	37,826,000	37,826,000	75,652,000
59A	101동(1,2,3,4호) 102동(3,4호) 103동(1,2,3,4호) 104동(1,2호) 105동(1,2,3호) 108동(1,2호) 109동(3,4호)	1	11	148,764,269	281,345,731	430,110,000	86,022,000	43,011,000	43,011,000	43,011,000	43,011,000	43,011,000	43,011,000	86,022,000
		2	17	169,994,269	281,345,731	451,340,000	90,268,000	45,134,000	45,134,000	45,134,000	45,134,000	45,134,000	45,134,000	90,268,000
		3	19	174,644,269	281,345,731	455,990,000	91,198,000	45,599,000	45,599,000	45,599,000	45,599,000	45,599,000	45,599,000	91,198,000
		4	19	179,294,269	281,345,731	460,640,000	92,128,000	46,064,000	46,064,000	46,064,000	46,064,000	46,064,000	46,064,000	92,128,000
		5~11	133	183,944,269	281,345,731	465,290,000	93,058,000	46,529,000	46,529,000	46,529,000	46,529,000	46,529,000	46,529,000	93,058,000
		12~18	83	190,924,269	281,345,731	472,270,000	94,454,000	47,227,000	47,227,000	47,227,000	47,227,000	47,227,000	47,227,000	94,454,000
		19층이상	12	199,304,269	281,345,731	480,650,000	96,130,000	48,065,000	48,065,000	48,065,000	48,065,000	48,065,000	48,065,000	96,130,000
59B	105동(4호) 106동(4호) 107동(3호) 108동(3호) 110동(3호)	1	3	149,322,431	282,397,569	431,720,000	86,344,000	43,172,000	43,172,000	43,172,000	43,172,000	43,172,000	43,172,000	86,344,000
		2	3	170,622,431	282,397,569	453,020,000	90,604,000	45,302,000	45,302,000	45,302,000	45,302,000	45,302,000	45,302,000	90,604,000
		3	5	175,292,431	282,397,569	457,690,000	91,538,000	45,769,000	45,769,000	45,769,000	45,769,000	45,769,000	45,769,000	91,538,000
		4	5	179,962,431	282,397,569	462,360,000	92,472,000	46,236,000	46,236,000	46,236,000	46,236,000	46,236,000	46,236,000	92,472,000
		5~11	35	184,632,431	282,397,569	467,030,000	93,406,000	46,703,000	46,703,000	46,703,000	46,703,000	46,703,000	46,703,000	93,406,000
		12~18	34	191,642,431	282,397,569	474,040,000	94,808,000	47,404,000	47,404,000	47,404,000	47,404,000	47,404,000	47,404,000	94,808,000
		19층이상	23	200,052,431	282,397,569	482,450,000	96,490,000	48,245,000	48,245,000	48,245,000	48,245,000	48,245,000	48,245,000	96,490,000
74	105동(5호) 106동(3,5호) 107동(4호) 108동(4호) 110동(4호)	1	2	212,627,374	351,352,626	563,980,000	112,796,000	56,398,000	56,398,000	56,398,000	56,398,000	56,398,000	56,398,000	112,796,000
		2	5	240,457,374	351,352,626	591,810,000	118,362,000	59,181,000	59,181,000	59,181,000	59,181,000	59,181,000	59,181,000	118,362,000
		3	6	246,557,374	351,352,626	597,910,000	119,582,000	59,791,000	59,791,000	59,791,000	59,791,000	59,791,000	59,791,000	119,582,000
		4	6	252,657,374	351,352,626	604,010,000	120,802,000	60,401,000	60,401,000	60,401,000	60,401,000	60,401,000	60,401,000	120,802,000
		5~11	42	258,757,374	351,352,626	610,110,000	122,022,000	61,011,000	61,011,000	61,011,000	61,011,000	61,011,000	61,011,000	122,022,000
		12~18	30	267,917,374	351,352,626	619,270,000	123,854,000	61,927,000	61,927,000	61,927,000	61,927,000	61,927,000	61,927,000	123,854,000
		19층이상	10	278,897,374	351,352,626	630,250,000	126,050,000	63,025,000	63,025,000	63,025,000	63,025,000	63,025,000	63,025,000	126,050,000
84	102동(1,2호) 106동(1,2호) 107동(1,2호) 109동(1,2호) 110동(1,2호)	1	9	294,837,753	388,942,247	683,780,000	136,756,000	68,378,000	68,378,000	68,378,000	68,378,000	68,378,000	68,378,000	136,756,000
		2	10	328,577,753	388,942,247	717,520,000	143,504,000	71,752,000	71,752,000	71,752,000	71,752,000	71,752,000	71,752,000	143,504,000
		3	10	335,977,753	388,942,247	724,920,000	144,984,000	72,492,000	72,492,000	72,492,000	72,492,000	72,492,000	72,492,000	144,984,000
		4	10	343,377,753	388,942,247	732,320,000	146,464,000	73,232,000	73,232,000	73,232,000	73,232,000	73,232,000	73,232,000	146,464,000
		5~11	32	350,767,753	388,942,247	739,710,000	147,942,000	73,971,000	73,971,000	73,971,000	73,971,000	73,971,000	73,971,000	147,942,000
		19층이상	7	375,187,753	388,942,247	764,130,000	152,826,000	76,413,000	76,413,000	76,413,000	76,413,000	76,413,000	76,413,000	152,826,000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 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계약체결
		1순위		2순위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생애최초	해당 (하남시 2년 이상 거주)	기타 (하남시 2년 미만/ 서울/경기/인천)	(서울/경기/ 인천)			
일정	2021.10.05(화)	2021.10.06.(수)	2021.10.07.(목)	2021.10.08.(금)	2021.10.15.(금)	2021.10.16.(토)~ 2021.10.31.(일)	2021.11.01(월)~ 2021.11.11.(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일반공급 : 자격검증 필요서류 - 특별공급 : 자격검증 필요서류 ※청약신청자격서류(10:00~16:00)	견본주택 방문 계약 (10:00 ~ 17: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 한국부동산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청약홈 검색")	• 견본주택 방문 계약체결 (견본주택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3-3 더샵갤러리 2층)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외 입장불가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함.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은 자(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①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②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③ 중소기업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④ 장애인: (경기도)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⑤ 철거주택소유자 : 하남시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상 청약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 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 됨.)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와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을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1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격요건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출생일 기준)하며,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양자 및 친양자)은 입양관계증명서의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신청 제한됨.(출산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01호(2020.09.29.)]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 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고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함)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 금액 이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은 해당 특별공급에 미적용 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계법령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4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자격요건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신청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하남시에 연속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하남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 청약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순위	전 주택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분 • 1순위 청약신청 제한자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내용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와 미계약 동 · 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하남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VIII 기타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감리회사	감리금액(원)	비 고
건축/구조	㈜유원건축사사무소	2,583,947,300	
	㈜팬구조엔지니어링	54,450,000	
전기/통신	㈜케이제이엔지니어링	601,159,000	
	㈜건창기술단	323,292,750	
소방	㈜한석소방이엔씨	501,759,5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하남씨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포스코건설
주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40, 4층(덕풍동, 맹자빌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법인등록번호	135771-0001607	174611-0002979

■ 견본주택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3-3번지 더샵갤러리 2층
■ 분양홈페이지 : http://www.더샵하남에디피스.kr ■ 분양문의 : 1833-2117

※ 본 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입주자모집공고의 전문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833.2117**

총 980세대 중 일반분양 596세대

시행 **하남씨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시공 **(주)포스코건설**